

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400호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(과태료) 내용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6. 5.

산업통상부장관

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(과태료)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위반)

1. 공고사유 : 행정처분(과태료)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6.6.5.~6.19(15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신고번호	상호	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소재지	전문분야
1	E09000340	(주)원진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	김*신 외 1 인	408-**-**153	(58227)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	교통,수자원개발, 일반산업기계,전 기설비
2	E09004614	주식회사 대한그린엔지니어링	임*용	146-**-**891	(59602) 전라남도여수시울촌면	교통,구조,도로공 항,도시계획,토질 지질
3	E12000716	주식회사 대흥이엔지	강*호	475-**-**992	(24441)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공원길	농림
4	E12000789	주식회사 효성산림	안*철	635-**-**569	(36323)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	농림
5	E12000663	(주)록연엔지니어링	안*식	282-**-**427	(57743)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	농림

4. 문의처 :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

(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, 044-203-4349, jungyn@korea.kr)

5. 공고내용 : 처분된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% 가산금을 합산 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 산금을 추가 고지(징수)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 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(중)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 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7.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,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